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59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2.

발 의 자 : 박성훈 · 김은혜 · 서일준

김성원 · 신성범 · 이인선

추경호 · 김정재 · 최보운

최은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한국까지의 이송 및 입국심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물리적으로 그 체포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고, 설혹 가능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조사 등이 매우 곤란해져 수사기관의 구속 필요성 입증 및 피의자의 소명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시한을 입국심사가 완료된 때부터 48시간 이내로 하는 단서조항을 두어, 수사기관의 구속 필요성 입증 및 피의자의 소명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200조의2 및 제200조의4).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0조의2제5항 중 “逮捕한 때부터”를 “체포한 때부터(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한 경우에는 입국심사가 완료된 때부터)”로 한다.

제200조의4제1항 후단 중 “체포한 때부터”를 “체포한 때부터(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한 경우에는 입국심사가 완료된 때부터)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200條의2(영장에 의한 체포) ① ~ ④ (생 략) ⑤ 逮捕한 被疑者를 拘束하고 자 할 때에는 逮捕한 때부터 4 8時間이내에 第201條의 規定에 의하여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하고, 그 기간내에 拘束令狀을 請求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被 疑者를 즉시 釋放하여야 한다. 第200條의4(緊急逮捕와 令狀請求 期間) ① 檢事 또는 司法警察 官이 第200條의3의 規定에 의 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 被 疑者를 拘束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檢事는 관할地方法 院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求하 여야 하고, 司法警察官은 檢事 에게 申請하여 檢事の 請求로 관할地方法院判事에게 拘束令 狀을 請求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 여야 하며, 제200조의3제3항에	第200條의2(영장에 의한 체포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체포한 때부터(대 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한 경 우에는 입국심사가 완료된 때 부터)----- ----- -----. 第200條의4(緊急逮捕와 令狀請求 期間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체포한 때부터(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체포한 경우에는 입국심사가

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② ~ ⑥ (생략)	<u>완료된 때부터</u>)----- -----.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